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회칙

2018. 11. 1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본 대학원의 설립정신인 ‘밀알정신’과 초교파적 독립교회를 지향하는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하여 본 대학원 원우들의 교육, 발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구성)

1. 원우회의 임원진은 회장단과 각 대학원 대표로 구성한다.
2.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예배국장, 회계, 서기로 구성한다.
3. 각 대학원 대표는 일반대학원 신학과 대표,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대표, 신학대학원 각 학차별 대표, 보육대학원 대표, 사회복지대학원 대표로 구성한다.

제7조 (지도) 본회는 본 대학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장 및 대학원 교학처장의 지도를 받는다.

제2장 원우회장단

제8조 (지위)

1.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원우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예배국장은 원우회 예배 등 관련행사를 담당한다.
4. 회계는 원우회의 회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5. 서기는 원우회의 회의 및 제반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9조 (선출)

1. 회장단 중 회장, 부회장은 11월 또는 12월 중 원우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고, 예배국장, 회계, 서기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2. 각 대학원의 대표는 각 대학원 원우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 후보자격)

1.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자여야 한다.
2.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복음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에 소속된 자여야 한다.
3. 불건전한 이단에 소속된 자는 후보 등록이 불가하다.
4. 당선 후 위 1, 2호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즉시 회장단 자격을 상실한다.
5. 후보 등록 시 소속교회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보 신청서를 정한 기한 내에 원우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원우회장은 후보 등록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을 후보등록 마감 7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11조 (투표)

1.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중복 투표는 무효 처리한다.
2. 투표는 11월 말 또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임기) 원우회장단의 임기는 당해 년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하며, 원우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 (신분보장) 원우회장단은 본 대학원 규칙에 의한 경우 외에, 전체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한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동안 그 지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3장 원우회비

제14조 (회비)

1. 원우회 회비는 한 학기 당 5만원으로 한다.
2.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회비 중 원우회장단의 운영비와 각 대학원 원우회의 운영비를 지급한다.
3. 원우회장단은 매 학기 초에 각 대학원 원우회의 회비납부 내역을 공지한다.

제15조 (회계)

1. 원우회장단은 운영비에 관한 세부 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2. 원우회장단은 한 학기에 2회 이상(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중) 회계보고를 한다.
3. 원우회장단은 전기 회장단의 회계기록 및 영수증을 종전 회장단의 임기 후 3년 이상 보관한다.

제4장 회칙 개정

제16조 (회칙 개정)

1. 회칙 개정의 발의는 회장단, 각 대학원 대표 4인 이상 또는 원우회원 3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2. 회칙개정 발의 시에는 발의안과 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원우회장단에서 심의하여 최소 투표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한다.
4. 회칙의 개정은 원우회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투표자의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원우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투표자의 1/2 이상 찬성으로 제정한다.
2. 본 회칙은 통과한 날(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